

●국토교통부령 제20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사업추진비”를 각각 “사업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현황 제4조제3항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를 “공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된 에너지 소비량을 해당 공공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 기준 등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7조제4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호·가구 등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명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2. 에너지관리공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2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검정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③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자격·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에너지평가사가 근무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3년마다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법 제31조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중전의 제12조)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70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민간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민간시험 제1급 1차 시험 합격자: 제1차 시험 면제

2. 민간시험 제2급 1차 시험 합격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의 합격자 결정 및 응시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의 면제에 관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별표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주요항목
제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제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2.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별표 3에 따른 제1차 시험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면제
-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별표 3에 따른 제1차 시험과목 중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 절약계획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I. 건축주 및 설계자

건축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구 분	[] 민간 [] 공공기관

건축물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	------	--------

건축 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

건축사	성 명	자 격 번 호
		(서명 또는 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무소 주소	
	전 자 우 편	휴대전화 번호

기계설비 설계사	성 명	자 격 번 호
		(서명 또는 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무소 주소	
	전 자 우 편	휴대전화 번호

전기설비 설계사	성 명	자 격 번 호
		(서명 또는 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무소 주소	
	전 자 우 편	휴대전화 번호

II. 건축 부문

건축 면적		제출대상 연면적	지상층: m ²	냉난방 면 적	지상층: m ²
			지하층: m ²		지하층: m ²
			합 계: m ²		합 계: m ²
총 수	지상:	층(층고: m)	지하:	층(층고: m)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단열	부위별	열관류율	단열재			
			종류	열전도율	두께	
	외 벽	W/m ² ·K		W/m·K	mm	
	지 붕	W/m ² ·K		W/m·K	mm	
바 닷	최하층	W/m ² ·K		W/m·K	mm	
	바닥 난방 층간 바닥	W/m ² ·K		W/m·K	mm	
단열 구조	종류	열관류율	일사투과율 (차폐계수* 0.86)	창의 구성	창틀 종류	기밀 성능
	I	W/m ² ·K				()등급 이상
	II	W/m ² ·K				()등급 이상
	III	W/m ² ·K				()등급 이상
	IV	W/m ² ·K				()등급 이상
	외벽 평균 열관류율 (창 및 문을 포함합니다)		W/m ² ·K	창 면적비 ^{주)}		%
차양 장치	차양장치 설치비율 (남향 및 서향)		%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W/m ²

III. 기계설비 부문

난방기기	난 방 용				급 탕 용				
	종류	용량	효율	성적계수	종류	용량	효율		
		kW kcal/h	%			kW kcal/h	%		
냉방기기	종류		용량		성적계수[COP]				
						kW usRT			
펌 프	급수용			급탕용			순환수용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배점	제어 방식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배점	제어 방식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배점	제어 방식
	m ³ /분			m ³ /분			m ³ /분		
송풍기	종류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효율			
						kW		%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활용 폐열시스템 채택 []				개별난방 []		개별냉난방 []		

IV. 전기설비부문

변전설비	수전 방식	수전 전압		수전 방식		위치	
		kV		회선		층	
	고효율 변압기	[]있음 []없음		2차측전력량계 시설		[]있음 []없음	
동력설비	콘덴서	전동기별 시설		집합시설		자동역률조정장치 [집합 시설인 경우]	
		[]		[]		[]있음 []없음	
	제어 방식	인버터 제어		채 택	전동기부하명		
		그 밖의 제어 방식		[]있음 []없음			
BEMS 또는 에너지 미터링 시스템	[]있음 []없음						
조명설비	주 거실 설계조도	lx		거실 조명밀도		W/m ²	
	주조명광원	옥 내	W		옥 외	W	
	조명기기	안정기		고조도 반사갓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 장소	
		형식	등급				
	조명 자동제어 시스템	[]있음 []없음		옥외등 격등조명 및 자동 점멸		[]있음 []없음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최대수요전력 관리	[]있음		[]없음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전체 콘센트 개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개수		설치비율		%	
	공동주택	도어폰		[]있음		[]없음	
		홈게이트 웨이		[]있음		[]없음	

V.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태양열 급탕/냉난방설비	냉 / 난 방 용			급 탕 용		
	종류	용량	집열효율	종류	용량	집열효율
		kW kcal/h	%		kW kcal/h	%
태양광 발전 설비	종 류	설치면적	발 전 용 량		발 전 효 율	
		m ²	kW		%	

(4쪽 중 제4쪽)

풍력발전 설비	종 류	설계최대풍속	발 전 용 량	날개 지름	지상고	
		m/sec	kW	m	m	
지열이용 열펌프설비	종류(형태)	냉난방 성능 [COP]	순환펌프 동력 합계	천공수/ 깊이	열교환기 파이프 지름	설계 유량(용량)
		난방[] 냉방[]	kW	()공/ ()m	mm	lpm/RT

작성방법

※ 여러 대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요 장비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단, 용량가중 평균 효율 및 배점을 제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 창 면적비 계산식 = 창 및 문 면적/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은 건축주를 공공기관으로 구분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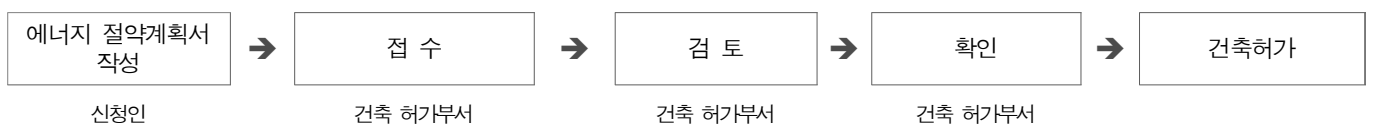
(휴대전화번호:)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1부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별표1]에 따름
------	--	------------------

처리 절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I. 총괄

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냉난방 연면적 합계) m ² (m ²)											
담당자	성명	부서 / 직위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전자우편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총괄)

기간	연도 분기	년				년				년				합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에너지 소비량	도시가스 (MJ)													
	전기 (kWh)													
	지역 냉난방 (Mcal)													
	유류 (kl)													
	기타 ()													
	합계 (kWh)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kWh/m ²)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kWh/m ² ·년)		(3개년간 평균)												(kWh/m ² ·년)

유의사항

※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기간은 총 3개년(12분기) 실적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보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뒷쪽)

II. 건축물 동별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소유구분	[] 임대 (소유자:) [] 소유								주용도				
	사용승인	년 월 일			연면적				㎡		냉난방면적		㎡	
	규 모	(지상) (지하)			층 총				냉난방 방식		(난방) (냉방)			
	소재지													
	건축물대장 고유번호									건축물 현황 구분				

에너지효 율등급	인증등급	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까지			
-------------	------	----	--	--	--	------	--	--	--	----------	--	--	--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해당 건축물)

기 간	연도 분기	년				년				년				합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에 너 지 소 비 량	도시가스 (MJ)													
	전기 (kWh)													
	지역 냉난방 (Mcal)													
	유류 (kl)													
	기타 ()													
	합계 (kWh)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kWh/㎡)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kWh/㎡·년)														
		(3개년간 평균) (kWh/㎡·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 공동주택 [] 업무시설

건 축 물 현 황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연면적/전용면적	m ² /	m ²
건 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 내 역	인증등급	인증번호	
	인 증 일	인증기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량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²·년)		
구 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 분	에너지사용량	1차에너지사용량
난 방			도 시 가 스 (a)		
급 탕			지 역 냉·난 방 (b)		
냉 방			열 (a + b)		
조 명			전 기 (c)		
합 계			합 계 (a + b + c)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년)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년)		

년 월 일



운영기관 CI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안내사항

□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란?

- ▶ 건축물 매매·임대 거래 시 에너지소요량,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 ▶ 대 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건축주 또는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인증기관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1차에너지소요량)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을 표준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에서 필요한 예상 에너지량
- ▶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에너지량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이 적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우수**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표시

□ 에너지사용량등급

- ▶ 에너지사용량 : 최근 1년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전기 및 열(가스, 지역난방, 급탕)에너지량
- ▶ 에너지사용량 등급 : 5개 등급(A~E)으로 표시, **A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사용량이 적음**

에너지사용량 등급 표시	구분	세부 내용																		
<p><공동주택></p> 	<p>①</p>	<p>■ 에너지사용량 등급(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시·도) 동일 면적 구간의 표준에너지사용량과 실제에너지사용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 부여 - 비율이 적을수록 에너지사용량이 적음 - 에너지사용량 등급 기준(에너지사용량 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A</th> <th>B</th> <th>C</th> <th>D</th> <th>E</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td> <td>~50%</td> <td>50~75%</td> <td>75~100%</td> <td>100~125%</td> <td>125%~</td> </tr> <tr> <td>업무시설</td> <td>~55%</td> <td>55~85%</td> <td>85~115%</td> <td>115~145%</td> <td>145%~</td> </tr> </tbody> </table>	등급	A	B	C	D	E	공동주택	~50%	50~75%	75~100%	100~125%	125%~	업무시설	~55%	55~85%	85~115%	115~145%	145%~
등급		A	B	C	D	E														
공동주택		~50%	50~75%	75~100%	100~125%	125%~														
업무시설	~55%	55~85%	85~115%	115~145%	145%~															
<p><업무시설></p> 	<p>②</p>	<p>■ 표준에너지사용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 동일 단지 내 동일 면적구간 내 세대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평균 에너지사용량 <p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구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구간</th> <th>2구간</th> <th>3구간</th> <th>4구간</th> <th>5구간</th> <th>6구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td> <td>~40</td> <td>40~60</td> <td>60~85</td> <td>85~135</td> <td>135~165</td> <td>16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 해당 건축물과 동일 용도, 지역, 규모의 건축물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평균 에너지사용량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전용면적 (㎡)	~40	40~60	60~85	85~135	135~165	165~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전용면적 (㎡)	~40	40~60	60~85	85~135	135~165	165~														
	<p>③</p>	<p>■ 에너지원별 사용량등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와 열에너지(▲)의 사용량등급을 각각 표시(업무시설의 경우 전기(▲) 사용량등급만 표시) <p>■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kWh/m²·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평균 에너지사용량 표시 																		

※ 에너지사용량 등급 및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공급기관 및 건축물대장에 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며, 건축물 일부가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사용량 등급 및 에너지사용량은 건축물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은 최종에너지사용량, 업무시설은 1차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1차에너지란 전기, 가스 등의 최종에너지를 소비자가 사용하기까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에서의 손실을 포함한 에너지로서, 에너지량에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공개하도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간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2703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88호, 2015.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의 내용 및 절차(안 제6조의2 신설)

- 1)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마다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공개의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에너지 사용량 분석결과를 공개 전에 미리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녹색건축물 전환 대상 기존 건축물의 범위(안 제6조)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전환 대상인 기존 건축물을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공건축물에서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

다.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안 제7조의2 신설)

일정한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외벽 재료를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정함.

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 1) 종전에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에 해당하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에 대하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 3)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로 하고, 제2차 시험은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로 함.

- 4) 건축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민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29일 이후 시행하는 최초 시험에 한하여 일부 과목을 면제함.
- 5) 에너지관리공단을 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 정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국토교통부 제공>

●여성가족부령 제70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영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4(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5제8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